#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30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 김주영·박해철·송옥주

서영석 • 박정현 • 김성회

복기왕 · 김민석 · 김현정

이용우 · 서영교 · 조정식

한정애 • 박균택 • 전형희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

현재 공공부문에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(공무직근로자)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음. 그러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처우, 인사·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, 각 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·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,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「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 훈령)」에 따라 2020년부터 '공무직위원회'가 설치 및 운영되었음.

하지만 여전히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 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음. 또한,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

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. 그럼에도 공무직위원회는 그 근거법령이 2023년 3월 31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마저 종료된 상태임.

공무직근로자의 인사·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·조정하고, 더 나아가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는 상설화를 통해그 업무의 계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.

이에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,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, 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되,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구분하고,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구분하여 분류함(안 제2조제2호).
- 나.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·파견근로자와 공공부 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함(안 제2조제3호).
- 다.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, 임금

- 등 근로조건,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라. 공무직위원회는 상시·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고,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(안제4조제3항).
- 마.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,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4항·제5항).
- 바.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,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(안 제9조·제10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, 임금 등 근로조건,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 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공부문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을 말한다. 이 경우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소속 기관을 포함하고,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자회사를 포함한다.

#### 가. 국가기관

- 1)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2)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
- 3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
- 나. 지방자치단체
- 다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 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라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 도"라 한다)의 교육관서
- 마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바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 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출자·출연 기관(이하 "지방공공기관"이라 한다)
- 2. "공무직근로자"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 - 가. 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
  - 나. 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직군, 정원, 보수체계 등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구분되어 적용되는 근로자
- 3. "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"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
  - 가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

- 나.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
- 다. 용역 근로자, 민간위탁 근로자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 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 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
- 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(이 하 "공무직근로자등"이라 한다)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조정한다.
  - 1. 인력의 운영·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·장기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
  - 2.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
  - 3.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  - 4.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
  - 5.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
  - 6.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·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 령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- 7. 연1회 이상 인원규모·직종·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

및 분석에 관한 사항

- 8.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.
  - 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국 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
  - 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,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.
    - 가.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
    - 나.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  - 3.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  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
  - 1.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·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 건을 정함에 있어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 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

- 2. 공공부문 상시·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고,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3.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
-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기획재정부 제2차관·교육부차관·행정안전부차관·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인사혁신처차장
- 2.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,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·행정 부지사 및 시·도교육청의 부교육감
- 3.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·산업별 연합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4.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

- 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
-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제4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, 제4조제2항제 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위원(이하 "당연직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

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,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9조(공무직발전협의회) ①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,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(이하"발전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1.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 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  - 2.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3.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, 근로조건,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

- 립 · 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
- ③ 발전협의회에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유치원·학교, 시·도 교육관서, 공공기관,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다.
- ④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기획단)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두며, 기획단은 단장과 2개의 과 및 단원으로 한다.
  - ②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유치원·학교, 시·도 교육관서, 공공기관,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- 제12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 행정기관·공

공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설문조사,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- 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·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,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무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수 있다.